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4호 2016. 1. 21(목)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09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2
- 사천시 훈령 제310호 사천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7
- 사천시 훈령 제311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13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1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2)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09호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6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 의결이 되었을 때 제56조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별표 3의2와 같다.

제6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3)

## [별표 1]

### 공무직근로자 정수표(제6조제5항 관련)

#### 1. 단순노무원·도로보수원·환경미화원의 정수

부서별	계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⑤	환경미화원 ⑥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①	현장지도 단속감시 상담인부 ②	자격을 요하는 인부 ③	단순 조무인부 ④		
<b>총 계</b>	<b>188</b>	<b>98</b>	<b>23</b>	<b>4</b>	<b>23</b>	<b>48</b>	<b>15</b>	<b>75</b>
본 청	<b>소 계</b>	<b>69</b>	<b>54</b>	<b>2</b>	<b>4</b>	<b>15</b>	<b>33</b>	<b>15</b>
	행정과	9	9			4	5	
	주민생활지원과	4	4			2	2	
	사회복지과	6	6	1		4	1	
	문화관광과	8	8			2	6	
	정보통신과	3	3				3	
	체육지원과	5	5			2	3	
	민원봉사과	2	2	1			1	
	회계과	1	1				1	
	투자유치과	1	1				1	
	교통행정과	2	2		2			
	건축과	1	1		1			
	건설과	1	1				1	
	도로과	15						15
	녹지공원과	10	10		1	1	8	
	토지관리과	1	1				1	
직속기관	<b>소 계</b>	<b>15</b>	<b>15</b>			<b>6</b>	<b>9</b>	
	보건소	6	6			6		
	농업기술센터	9	9				9	
사업소	<b>소 계</b>	<b>102</b>	<b>27</b>	<b>21</b>		<b>2</b>	<b>4</b>	<b>75</b>
	평생학습센터	3	3				3	
	상하수도사업소	22	22	21			1	
	환경사업소	77	2			2		75
출장소	<b>소 계</b>	<b>1</b>	<b>1</b>				<b>1</b>	
	신수출장소	1	1				1	
의회	<b>소 계</b>	<b>1</b>	<b>1</b>				<b>1</b>	
	의회사무국	1	1				1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4)

## 2. 청원경찰의 정수

부서별	합계	경 비			감 시				
		소계	청사경비	시설물경비	소계	하천감시	주정차순찰	재해예방예찰	
<b>총 계</b>	<b>32</b>	<b>24</b>	<b>1</b>	<b>23</b>	<b>8</b>	<b>2</b>	<b>2</b>	<b>4</b>	
본 청	소 계	27	19	1	18	8	2	2	4
	행정과	1	1	1					
	사회복지과	1	1		1				
	문화관광과	3	3		3				
	교통행정과	2				2		2	
	체육지원과	11	11		11				
	우주항공과	1	1		1				
	재난안전과	4				4			4
	건설과	2				2	2		
	도로과	2	2		2				
사 업 소	소 계	5	5		5				
	평생학습센터	1	1		1				
	환경사업소	1	1		1				
	상하수도사업소	3	3		3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5)

[별표 3]

## 징계양정기준(제56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이거나, 정도가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b>1. 성실의무 위반</b>				
가. 직무태만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나. 기 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2. 복종의무 위반</b>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b>3. 직장이탈 금지 위반</b>				
가. 무단결근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나.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4. 친절 공정의무 위반</b>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5. 비밀엄수 의무 위반</b>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b>6. 청렴의무 위반</b>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b>7. 품위유지의무 위반</b>				
가. 성폭력(미성년자)	해고	해고-정직	정직	정직-감봉
나. 성폭력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해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견책
라. 음주운전	별표 3의2와 같음			
마. 기타	해고	정직	감봉	견책
<b>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 무위반</b>	해고	정직	감봉	견책

※ 비교

1.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6)

[별표 3의2]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56조 관련)

유 형 별		징계기준	비 고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감봉 - 견책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 - 감봉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감봉	-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3.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감봉	
4.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 정직	
6.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 - 정직	
7.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고 - 정직	
8.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 - 정직	
9.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고	
10. 운전업무 관련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해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7)

##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10호

사천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양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근무위치 및 근무지역) ① 청경의 근무위치와 근무지역은 청경의 배치목적에 따라 시장의 명을 받아 부서장이 지정하되, 일반행정 사무보조 등 배치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배치·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8)

② 제1항에 따라 부서장이 청경의 근무위치 및 근무지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비상사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위치 및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청경 배치목적 및 일반업무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 및 인수인계)** ① 근무자는 근무개시 20분 전에 부서장에게 신고하고 제반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교대근무를 하는 근무자는 다음 근무자에게 지시사항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물론, 그 밖에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근무위치가 변경되거나 전보된 때에는 당해 경비구역 내 일체의 순찰·단속 사항을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무원”을 “청경”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항을 신설하며,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청경은 담당업무 별로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순찰사항 및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9)

⑥ 청경은 근무 중 발생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보감사담당관” 을 “기획예산담당관” 으로 “경비과장” 을 “경비교통과장” 으로 “투자유치과장” 을 “재난안전과장” 으로 각각 한다.

별표 1과 별표 1-1,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0)

[별표 1]

## 신분증명서(제5조제2항관련)

(앞 쪽)

<p>신 분 증</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p>사진 (3cm × 4cm)</p></div> <p>(성 명)</p> <p>사 천 시</p>
--

(뒷 쪽)

<p>(신분증 번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3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p>IC칩</p></div> <p>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발급일자)</p> <p>사천시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직인</span></p> <p style="text-align: right;">☎055)831-2114</p>
--

54mm×85.6mm(폴리염화비닐(PVC)-전자카드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1)

[별표 1-1]

## 청경의 배치 목적 및 일반업무(제3조제4항 관련)

부 서 별	배 치 목 적	일 반 업 무
행정과	청사 경비	○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방법, 방호, 방화, 기타 보안순찰 점검 ○ 청사내외 주차질서 확립
사회복지과	시설물 경비	○ 종합장사시설 청사 및 시설물 경비
문화관광과	시설물 경비	○ 박재삼박물관 시설물 경비 ○ 관광시설물 경비
교통행정과	주·정차 순찰	○ 주·정차 순찰 및 통제실 경비
체육지원과	시설물 경비	○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경비 -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시립공도장 등 체육시설물 경비
항공산업과	시설물 경비	○ 항공우주과학관 시설물 경비
건설과	하천 감시	○ 하천구역 순찰 및 경비 ○ 재해위험요인 사전 점검
재난안전과	재해예방·예찰	○ 재난상황실 관리
도로과	시설물 경비	○ 도로시설물 경비 및 점검
평생학습센터	시설물 경비	○ 종합사회복지관 청사 및 시설물 경비
환경사업소	시설물 경비	○ 쓰레기매립장 시설경비
상하수도사업소	시설물 경비	○ 사업소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2)

## 【별표 2-1】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0조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장애	견책-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정직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정직-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과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과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해임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3)

## 훈 령

사천시 훈령 311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1월 2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우주항공과 우주항공산업담당·우주항공지원담당 분장사무란과  
별표 2의 기술지원과 원예특작담당·식량작물담당 분장사무란을 각각 별  
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4)

[별표 1]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우 주 항 공 과	우주항공산업 담 당	1. 국가우주항공산업단지 종합계획수립
		2.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및 수출산업지원
		3. 해외시장 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
		4. 경남항공 우주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KAI 및 협력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
		7.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추진
		8.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업무
		9. 국·과내 서무·일상경비 관리 및 보안업무
		10. 과내 공무원·기간제근로자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우주항공지원 담 당	1. 국가항공산업단지조성 지원
		2.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3. 항공우주 특화산업단지 지원사업
		4. 항공우주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5)

[별표 2]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 지원과	식량작물 담당	1. 식량생산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종자 알선 공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4. 병해충 방제 농약 수급 및 농약 사용법 지도
		5. 수도전작물 식부면적 및 수확량 조사
		6. 병해충 예찰포(수도, 소득작물)운영
		7. 쌀 전업농 육성
		8. 유희농지 작물 재배지도
		9.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관한 업무
		10. 농업기계화 영농단 재배기술 지도
		11. 그 밖에 농산자재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식량작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3. 고품질 쌀생산 자재지원
		14. 농촌일손돕기에 관한 업무
		15.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에 관한 업무
		16. 전작물 생산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7.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관한 업무
		18. 토종농산물 직불제사업
		19. 농업기상 업무
		20.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업무
		21.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
		22.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23. 농작물 재해대책

# 사 천 시 공 보

제434호(13)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 지원과	원예특작 담당	1. 시설원예·과수·채소·화훼·특작생산 지원사업
		2. 시범사업 및 주산단지 육성 지원사업
		3. 원예특작 재배기술 지도
		4. 원예특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원예특작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채소 종묘상 등록 및 지도
		7. 수출농단 육성 및 기술지도
		8. 소득작목 분야별 연구회 육성
		9. 과수FTA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10. 과수FTA폐원지원사업 사후관리
		11. 과수원 정비사업
		12. 과수 재해보험 관리 및 지원사업
		13. 원예특작분야 통계조사
		14. 원예특작분야 관찰포 조사